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준호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547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3월 31일

발 의 자: 정준호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김동욱, 김성준,
김영철, 김원중, 김원태,
김형재, 남창진, 민병주,
박강산, 박승진, 박철성,
서상열, 송도호, 송재혁,
오금란, 유정인, 유정희,
이영실, 이용균, 이원형,
임종국, 한·신, 허·훈,
홍국표 의원(25명)

1. 제안이유

-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특히 자전거 이용자들이 이용 시 준수해야 할 교통법규와 안전 수칙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운행함으로써 보행자 및 차량 운전자와의 충돌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
- 이에 공공자전거 대여 시 이용자가 준수해야 할 자전거 통행원칙과 운전자 준수사항 등의 교통법규를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해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공자전거의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공공자전거 앱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7호).
- 나. 공공자전거 앱에서 대여자가 자전거 통행원칙과 운전자 준수사항 등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를 인지하도록 안내해야 함을 규정함(안 제12조의2제4항).

다. 서울시와 협약한 민간이 개발 및 운영 중인 공공자전거 앱에서도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를 안내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자 함(안 제12조의 2제5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서울공공자전거 앱”이란 서울공공자전거 회원가입 및 기본요금 결제, 무인 대여 반납 서비스 이용 등이 가능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말한다.

제12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이용 시민이 공공자전거 대여 시 통행원칙과 운전자 준수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서울공공자전거 앱에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를 반드시 표출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민간 공공자전거 앱(공공자전거 이용 시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시와 협력을 통해 연계한 민간 플랫폼 사의 앱을 말한다.)에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가 표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6. (생략)</p> <p><u><신설></u></p> <p>7.·8. (생략)</p> <p>제12조의2(공공자전거 및 공공자전거대여소등의 설치·운영) ① ~ ③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제2조(정의)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서울공공자전거 앱</u>”이란 <u>서울공공자전거 회원가입 및 기본요금 결제, 무인 대여 반납 서비스 이용 등이 가능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말한다.</u></p> <p>8.·9. (현행 제7호 및 제8호와 같음)</p> <p>제12조의2(공공자전거 및 공공자전거대여소등의 설치·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시장은 이용 시민이 공공자전거 대여 시 통행원칙과 운전자 준수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서울공공자전거 앱에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를 반드시 표출하여야 한다.</u></p> <p>⑤ <u>시장은 민간 공공자전거 앱(공공자전거 이용 시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시와 협력을 통해 연계한 민간 플랫폼 사의 앱</u></p>

④ · ⑤ (생략)

을 말한다.)에 자전거 관련 교통
법규가 표출되도록 노력해야 한
다.

⑥ · ⑦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자전거 대여 시 이용자가 준수해야 할 자전거 통행원칙과 운전자 준수사항 등의 교통법규를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을 의무 사항으로 규정해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공자전거의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병준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 계 분 석 관	김지혜

☎ 02-2180-7952
e-mail : kjh0123@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